

Tax & Legal Alert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입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의 중요한 개정 및 보완 사항

2025년 7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입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의 중요한 개정 및 보완 사항



일반 정보

2025년 6월 25일, 국회는 입찰법, 민관협력(PPP) 형태의 투자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VAT), 수출입세법, 투자법, 공공투자법,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최근 기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번 뉴스에서는 Deloitte Vietnam이 **수출입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에 대한 주요 개정 및 보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내국 수출입 활동;
- 0% VAT 세율 적용 범위 확대;
- 우인증기업 (AEO) 제도 적용 범위 확대
- 수입세 면제 적용 범위 확대

1

내국 수출입 활동

내국 수출입 활동에 대한 규정은 이전의 여러 초안 및 제안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다양한 방안의 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된 관세법에 제47.a조로 공식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 수출입 활동의 정의

"내국 수출입 물품이란,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의 구매, 가공, 임대 또는 차용 계약에 따라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인도 및 수령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경과 규정

위 내국 수출입 관련 규정은 개정된 관세법의 시행일 이전에 **등록되었으나 통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세관 신고 건에도 적용됩니다.

개정된 관세법 제47.a조에 따른 보완 규정

2

0% VAT 세율 적용 범위 확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a점에 따라, "내국 수출 물품"이 **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a점에 따른 수정 및 보완 규정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입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의 중요한 개정 및 보완 사항 (계속)

3 우인증기업 (AEO) 제도 적용 범위 확대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우인증기업(AEO) 제도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보완 사항

AEO 인정 요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은 일부 기업 유형에 대해 우인증기업 제도(AEO)를 적용할 때 면제됩니다:

(1) 2년 연속 관세 및 세법 준수 실적 보유 요건

(2) 연간 수출입 실적 기준 요건

해당 면제는 과학기술부가 고시하는 다음 유형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 ❑ 하이테크 기업;
- ❑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신설 기업;
- ❑ 전략 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 ❑ 핵심 디지털 기술 제품 생산, 반도체 칩의 연구·개발·설계·제조·패키징·시험 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 ❑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부품 등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지정 품목 목록에 포함된 기술 관련 수출입 물품에 대한 AEO 제도 적용

AEO 제도는 반도체, 하이테크, 전략 기술, 핵심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며, 해당 품목은 **과학기술부가 발행한 목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목록에는 베트남 수출입물품 통일품목분류표에 따라 정렬된 HS 코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수정 및 보완 규정

4 수입세 면제 적용 범위 확대

수출입세법 제16조 제18항 및 제21항에 따라 수입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보완되었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일부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물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위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장비, 특수 예비 부품, 원자재, 문서 및 과학 출판물;
- ❑ 관련 투자 프로젝트의 수입 고정자산
- ❑ 과학기술 기관 또는 하이테크 기업의 신규 또는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서, 연구 또는 생산 활동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되는 원자재, 재료 및 부품
- ❑ 국내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아 디지털 기술 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 재료 및 부품, 그리고 연구개발센터에서 연구 및 시험 생산 목적으로 수입되는 원자재, 재료 및 부품

개정된 수출입세법 제16조 제18항 및 제21항에 따른 수정 및 보완 규정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입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의 중요한 개정 및 보완 사항 (계속)

6 Deloitte의 견해 및 권고사항

-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내국 수출입 활동의 정의는 본질적으로 대부분의 관세 및 세무 관련 절차상 병목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안정성과 확신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 규정은 제08/2015/NĐ-CP호 시행령 발효일 이후 발생한 미해결 사안들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그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업들은 과거 거래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식 확인을 위해 **관할 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 기타 일반 기업들의 경우 AEO(우수공인기업) 지위 획득을 위해 5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반면, 과학기술부에서 공표한 하이테크 및 전략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 규정을 통해 AEO 신청 자격이 완화된, 긍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AEO 제도는 반도체 산업, 하이테크, 전략 기술, 핵심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공식 품목 목록과 관련된 수출입 물품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일반적인 사업 목적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개정 규정에 대한 신속한 인지 및 이행 여부가 성공적인 대응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 ❑ 개정 및 보완된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향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서둘러)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률 수준의 규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될 하위 법령의 제·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follow up** 하는 것이 권장된다. 해당 지침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시행 과정에서는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실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세 및 세무 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준수 및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 권장된다.
- ❑ Deloitte Vietnam의 관세 및 글로벌 무역 전문가들은 수출 제조업체, 수출가공기업, AEO 기업을 대상으로 다년간의 경험과 깊이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규정과 관련하여 귀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란다.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2021 - 2024)



Contact us

Vietnam Korean Service Group

Deloitte Global Korean Services Group(KSG)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KSG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및 언어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상주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 기업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 HCMC office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Director – Hanoi office

+ 84 96 227 8254

kyungryu@deloitte.com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

Deloitte's Tax & Legal Newsletter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2021 – 2024)**



Contact us



Bui Tuan Minh

Country Tax & Legal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Pham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Vu Minh Ngoc

Tax Partner
+84 28 7101 4645
ngocmvu@deloitte.com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vietnam)

Deloitte's Tax & Legal Newsletter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Office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is a member firm of Deloitte Global. Deloitte Asia Pacific members and affiliates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more than 100 c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In member countries, business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separate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documen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no DTTL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and their employees shall be deemed to, within the scope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provide services or give opinions, professional advice for reader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dvice to the reader and shall not affect other advice provided by any employee of the Deloitte Found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the individual cases of the enterprise.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ial or business situation, you should consult a professional adviso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mad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no member of the Deloitte Companies Network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los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der's use, publication, dissemination of, or reliance on this material to act, inaction, or make any decisions.